

2019년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구 매 팀 장)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건입동 행복주택 건축공사』 외 2건의 계약방법 심의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9-06호 심의건을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 발 2 팀 장	<<제2019-06호 부의안건 설명 >>
위 원 장	개발2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계약심의 결과 약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개 발 2 팀 장	설계시와 심사시의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단가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한 품목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기타 품셈의 적용 등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0.3%의 비율로 약 4천9백만원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직접 발주하시는거죠?
개 발 2 팀 장	네 자체발주입니다.
◎ ◎ ◎ 위 원	<p>시공능력평가액제한이 있는데요. 추정가격이 약 116억 정도 되는데 적격심사시 실적점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약 210억정도 실적이 있어야 만점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단독으로 갈수 있는 업체가 약 3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육지업체의 경우 약 420억 정도 실적이 있어야 공동도급으로 들어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의 지분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공능력평가제한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p>
개 발 2 팀 장	<p>기존에 저희가 했던 소규모공사와는 다른 규모의 공사이고요.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공사여서 공사의 난이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실적점수도 있지만 추정가격의 2배정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업체가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도내업체의 참여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위 원 장	실적제한의 경우 공동주거시설로 제한이 되는 건가요?
개 발 2 팀 장	네.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실적을 갖춘 업체는 도내에 많지 않아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코자 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실적제한이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중 반드시 하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요?
개 발 2 팀 장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난이도 등을 생각해서 양질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시공능력평가액의 제한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의 효과는 대충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제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요? 그리고 기대효과와의 비교 부탁드립니다.</p>
개 발 2 팀 장	<p>부작용이라기보다는 도내 2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단독의 경우 약 32개 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외 업체와의 공동수급까지 판단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소규모업체의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된 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건의 공사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해안가에 위치해서 파일공사 약 400공이 필요하고, 11층까지 올라가는 공사여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p>
△ △ △ 위 원	<p>우려되는 점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어 보이고, 그리고 입찰방법으로 내역입찰도 적절하고 적격심사도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안의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p>
위 원 장	<p>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건입동 행복주택 건축공사』 계약방법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p>
위 원 장	<p>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07호 심의건을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2019-07호 부의안건 설명 >></p>
위 원 장	<p>삼다수생산1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위 원	<p>이 설비가 직접생산 증명이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건 아닌가요?</p>

발언자	발언내용
구 매 팀 담 당 자	특수설비의 납품이어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위 원	명확한 규격서의 작성이 어렵고 국가별 제조사별 기술규격이 상이하다는 말은 제조과정에서 제조설비기술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최종 물건에 관한 기술규격이 아니고?
위 원 장	설비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달라서 그에 관한 사항이 작성된 것입니다.
◇ ◇ ◇ 위 원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의 규모는 상관없이 실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네. 저희 캐파에 맞는 제품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 ◇ ◇ 위 원	우려되는 것은 수제맥주 같은 소규모 설비의 경우에도 실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원 장	L5 설비 같은 경우 시간당 72,000병을 생산하고 있고요. 해당 건의 경우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력은 세계 상위 5개사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 ◇ 위 원	여기서는 그 사항이 안보여서요.
위 원 장	기술규격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L5의 실적제한은 5년인데 여기서 왜 10년인지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예규상에 보면 실적제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0년의 실적 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 위 원	이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현재 3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만약에 5년의 경우에는 달라지나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아니요. 세군데로 예상합니다.
□ □ □ 위 원	의결주문에 보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니즈에 대응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적을 10년으로 하는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요 구하는게 맞지 않은가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실적제한을 10년으로 한 이유가 5개 품종을 생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먹는 생물 뿐만 아니라 음료까지 납품한 업체까지 고려해서 적용했습니다.
▽ ▽ ▽ 위 원	그러면 오히려 설비 규격의 적합성 부분에 점수를 반영해야하는데 예비품 무 상공급계획에 4점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 보다는 설비규격의 적합성이나 기 술우수성 부분에 점수를 더 주는게 맞지않은지요?

발언자	발언내용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설비별로 특성이 다르다보니 설비 고장 등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해서 예비품 항목도 평가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 ▽ ▽ 위 원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에 총12점을 반영 했는데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려면 다른 부분에 점수가 반영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삼 다 수 생 산 3 팀 장	조직개편이전에 담당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설비의 경우 일렬로 배열이 되어서 한 공종에서 고장나면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게 되도록 예비품의 공급 계획에 대한 점수를 반영했습니다.
△ △ △ 위 원	<p>네. 계약특수조건을 보시면..</p> <p>제1조에서 목적의 하단을 보면 “이 조건에서 ~ 따른다” 이 부분은 제31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해서 옮기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p> <p>그리고 제1조에 이하 ‘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공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는 1조항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그다음에는 제6조, 제7조, 제9조를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평가점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p> <p>그다음에는 제20조에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면 꼭 들어가야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써야한다면 이 항목은 계약상대자가 되면 지켜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3조에 배치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p> <p>그다음에 21조를 보시면 시운전 성능시험과 인수시험의 순서가 맞는지요? 인수를 받고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는건 아닌가요?</p>

발언자	발언내용
삼 다 수 생 산 3 팀 장	<p>성능시험이 되어야 인수시험을 하는 것이고, 성능시험이 안됐는데 저희가 인수시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p>
△ △ △ 위 원	<p>네.</p> <p>그리고 25조 하자보증을 보면 제1항의 내용은 그러니깐 제21조의 제4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25조는 순수히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만 기술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p> <p>그다음에는 제29조 분쟁의 해결과 제3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논리상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가 먼저 나와야합니다.</p> <p>그리고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내용을 보면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요한다는 말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p> <p>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눠줘야합니다.</p> <p>다만,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p> <p>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부분에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p>
◇ ◇ ◇ 위 원	<p>제가 봤을 때 제안서 평가 및 발표 등은 특수조건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공고문등에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p>
구 매 팀 담 당 자	<p>말씀드리자면 특수조건은 계약 진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제안요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요청서에 있기 때문에 특수조건에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p>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p>네. 제안요청서와 특수조건에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위원장님 기술규격서가 저희 심의대상인가요?
위 원 장	기술규격서는 심의대상은 아니지요.
◇ ◇ ◇ 위 원	그러면 기술규격에 내용이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구성됐다고 볼수 있진 않은가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네. 생산설비는 직렬로 구성되어있고요. 설비별로 특수한 규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벨러의 경우 에어 주입방식이라든가 모노블럭 충전방식에서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증제시 등 특수기계장치에 대해서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위 원 장	질문을 바꿔서 하자면 지금 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었을텐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규격들을 공통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업체가 가능한가요?
삼 다 수 생 산 3 팀 장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다 참가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각각의 업체마다 설비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의 상이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급된 것이고요.
□ □ □ 위 원	그러니깐 말씀하신 내용은 요구하는 규격이 특정업체가 아니라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네 제가 물어봤던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삼다수생산3팀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업체마다 노하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비를 구성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저희가 주어진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깐 컨베이어 벨트 등의 배치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력은 갖춘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구성된 제안서입니다.
□ □ □ 위원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발표회를 보면 ‘사업참가등록 신청시 사업참가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21인 중 추첨을 통해 최종7인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에 따르면 사업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입니다.
구매팀담당자	예비명부 21인을 밀봉을 한 상태에서, 입찰참가등록시 추첨을 통해 다빈도로 선정된 최종 7인을 평가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 □ □ 위원	그러니깐 평가위원하고 사업참가자는 별개죠? 그런데 문장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위원장	그러면 사업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로 평가자 7인이 구성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특수조건에 분쟁의 해결을 보면,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정 다음에 “또는” 이란말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계약법 제34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쟁해결방법을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표현을 하신다면 중재에서 중재라는 표현을 아예 빼시고 조정 또는 소송절차하시거나 중재 또는 소송절차라고 문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견해로는 조정 또는 소송절차는 절차상 좀 맞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자체가 행정심판이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에 불복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 이렇게 가시는게 좀 더 맞지않을까? 싶습니다.</p>
위 원 장	이 부분은 구매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구 매 팀 장	이 부분은 법률 확인해서 정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 ○ ○ 위 원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정할 수 있진않나요?
□ □ □ 위 원	이 조건에서는 특정이 되지 않아서요. 지방계약법에서는 둘 중의 하나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예 조정이나 중재를 택하지 않으면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서요. 법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 △ △ 위 원	나올 애긴 다나온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내용들 정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p>용어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주시고요</p> <p>조항 배치에 대해서는 순서가 논리적 상호관계라든지 중복이라든지 밀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p> <p>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라든지 다른 사례라든지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p> <p>7조9조 등 특수조건은 제안요청서에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쪽으로 몰아서 명확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p> <p>평가위원 선정 부분은 문구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p> <p>『제주삼다수 L2생산라인 리모델링 생산설비 제작·설치』 계약방법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p>
위원장	<p>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08호 심의건을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제안요청서라든가 계약특수조건이라든가 동일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7호안건에서 지적한 사항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삼다수생산1팀장	<p><<제2019-08호 부의안건 설명 >></p>
위원장	<p>삼다수생산1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p> <p>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위원	<p>실적제한에서 시간당 개수가 되어있네요?</p> <p>앞에것은 수량제한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p>
삼다수생산1팀장	<p>앞에 설명한 설비는 공병을 만들어서 라벨을 붙이고 제품수를 넣고 포장을 해서 나가는 설비이고,</p> <p>본 안건의 설비는 공병을 만들기 전단계의 설비인데 프리폼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공병을 만드는 설비로 이전하는 그런 특수기계 제작설치 건입니다.</p>
◇ ◇ ◇ 위원	<p>설비가 다른 설비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p>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p>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에 것은 10년 이내 납품한 실적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시간당 4만개 납품 실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기술규격서에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규격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격에 4만개라는 개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요? 지금 두 안건의 실적제한 조건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p>
삼다수생산1팀장	그러면 4만개라는 것은 규격서에도 나와있으니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입찰참가자격에서와 기술규격서에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실적이 있는 곳하고 기술을 구현 할 수 있다고 하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 하세요.
◆◆◆ 위원	거꾸로 7호안건에서 모노블럭이라든가 라벨라기준이라든가 명확히 수치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나요?
삼다수생산1팀장	여유분을 감안해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단계 설비가 27,000개 이기 때문에 4만개로 설정을 했는데요.
위원장	명확하게 하셔야 되요.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과 규격서에 기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삼다수생산1팀장	그러면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의에 따라서 넣고 뺄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예견이 되어서 판단을 하셔야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7호안건과 달리 참가자격을 더 명확히 한 이유가 뭘 기대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이 건은 특수기계의 제작설치 건으로 말 그대로 특수기계입니다. 기성품이 없이 제작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4만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7호와 달리 8호의 사출기의 경우에는 업체가 많나요? 종합적인 생산라인 구성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단순히 사출기만 납품하는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네. 사출기업체는 많이 있어서 저희가 4만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래서 좀더 명확히 검증이 된 회사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출기 제작업체와 몰드제작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 ▽ ▽ 위 원	8호안건도 보시면 6개의 품종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에 보시면 라인 체인지의 시간 제시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고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삼 다 수 생 산 3 팀 장	블로워 설비의 체인지시간이 기본 두시간입니다. 그러면 생산라인의 체인지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30분 내외로 되어서 특별히 두시간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던 것이고요. 참가자격에서 아까 7호는 여러대의 설비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생산하는 설비라인이고요. 지금 8호는 1대의 설비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산라인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위 원	금형 교체시간을 보시면 최우수가 4점인데요. 몇시간 이상되야 4점을 줄수 있는 것이죠?
삼 다 수 생 산 3 팀 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블로워 설비의 체인지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출기고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것인데..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점수가 평가 될 것입니다.
▽ ▽ ▽ 위 원	시간에 따른 평가표를 별도로 나눠 주실 건가요?
삼 다 수 생 산 1 팀 담 당 자	이 체인지 시간은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3시간, 2시간, 5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명시한다면 특정업체 특혜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명시를 안했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 □ □ 위 원	상대평가여도 70점 이상이면 합격업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삼 다 수 생 산 1 팀 장	처음에 저희가 시간에 따른 평가표를 삽입을 했었습니다. 아까 담당자 의견처럼 특정업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교체 시간을 최고로 제시한 업체에게 점수가 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위 원 장	<p>자. 정리하겠습니다.</p> <p>첫 번째로 실적 제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96캐비티 시간당 4만개로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7호 안건처럼 할 것 인지였습니다. 발주부서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6가지의 구성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4만개라는 실적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발주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p>
◇ ◇ ◇ 위 원	<p>실적제한을 하고 들어와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보면,</p> <p>이미 4만개의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성능보증 계량평가에서 모든 업체가 이미 최우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적제한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신규업체에서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p>
위 원 장	<p>17페이지의 배점기준 말씀하신 것이죠?</p> <p>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적제한에서 4만개를 제시했는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4만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예요. 그렇죠?</p> <p>자. 8호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재검토하고 기준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유보를 하고 보완이 되면 재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원	<p>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화 부분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말하자면 평가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최대한 배제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서 옳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추후에 재심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합니다.</p>
위원장	<p>그러면 8호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완료하고 결론맺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있어서 보완을 한 후에 재요청하면 재심의하여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p> <p>이상으로 오늘 3가지 안건을 심의를 했고요.</p> <p>첫 번째 안건은 원안의결 했고,</p> <p>두 번째 안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보완 내지는 수정하시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p> <p>그리고 8호안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견을 관철코자 한다면 근거 등을 충분히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